

일본 보험대리점 감독체계 개편 및
내부통제 규제

강윤지 연구원

요약

202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일본은 2026년 6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직접 감독체계를 도입함. 빅모터(Big Motor) 사건과 보험료 담합, 고객정보 유출 등을 계기로 금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대리점에 대해 기존 보험회사의 위탁관리와 별도로, 대리점 자체의 준법, 민원 처리, 겸업의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강화된 체제 정비 의무를 부과함

1. 배경 및 경과

- 일본은 2025년 3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2026년 6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금융청의 감독을 강화함¹⁾
 - 이번 개정은 보험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감독체계를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판매채널 전반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청은 보험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구조였음
 - 해당 규제는 보험업법 개정 및 하위 규정 정비가 2025~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²⁾
 - 대형 대리점은 단기간 내 내부통제 조직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운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존의 '영업 중심 조직'에서 '통제·준법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일본 보험 유통 구조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일본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자동차보험 부정청구 및 조직적 영업관행 문제가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보험회사를 통한 간접적 관리에 주로 의존하던 구조를 영향력이 큰 대형 복수대리점에 자체적인 법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구조로 보완함³⁾
 - 2023년 빅모터(Big Motor)⁴⁾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리비 부풀리기 및 보험금 과다청구가 조직적으로 발

1) Japan FinTech Observer(2026. 3. 24.), "Japan's Insurance Crackdown: Mega-Agencies Face New Compliance Hammer in 2026"

2) 金融庁(2026. 3. 30.), "令和7年改正保険業法(1年以内施行)に係る「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等の一部改正(案)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等の公表について"

3) Mori&Partners(2025. 5. 7.), "Japan to Ame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Strengthened Oversight of Large Insurance Agents and Tighter Controls on Inducements"

4) 빅모터(Big Motor)는 중고차 판매·정비업 외에도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자동차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차량 판매·정비·보험모집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 구조였음

생하면서 보험회사와 대리점 간 유착 문제가 구조적으로 드러난 바 있음⁵⁾

- 해당 사건을 계기로 보험회사의 판매관리 체계뿐 아니라 대리점의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금융청은 판매채널 자체를 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됨
- 일본 금융청도 대리점의 판매행위가 보험회사의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황임

〈표 1〉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및 감독당국 조치

시기	내용
2023년 9월	보험금 부정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이 손보재팬(Sompo Japan)과 빅모터(Big Motor)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2023년 12월	보험료 담합(가격조정) 문제로 손해보험회사 4개사 ⁶⁾ 에 업무개선명령을 발령
2024년 1월	보험금 부정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손보재팬과 모회사에 업무개선명령을 발령
2024년 5월	대형 보험대리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
2024년 7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보고징구명령(보고 제출 요구)을 발령
2024년 10월	보험료 담합(가격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회사 4개사에 행정처분을 실시
2024년 11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청이 추가적인 보고징구명령을 발령
2025년 3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 4개사에 업무개선명령을 발령

자료: 日本經濟新聞(2025. 6. 6.), “改正保険業法で何が変わる? 大規模代理店にコンプラ責任者”

2. 주요 내용

○ 금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을 ‘특정 대형 복수대리점’으로 지정하고,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및 지배구조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직접 감독체계를 도입함

- 금융청은 복수 보험회사로부터 연간 20억 엔 이상의 모집수수료를 수취하는 보험대리점을 ‘특정 대형 복수대리점’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감독체계를 적용함
 - 약 100개 대형 보험대리점이 해당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보험 유통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유한 핵심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함⁷⁾
- 특정 대형 복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를 구축·운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됨
 - 기존에는 대리점을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로 인식하여 내부통제 구축 책임을 보험회사에 주로 부여하였음

5) 보험회사와 대리점·정비업체 간 이해상충 및 감독 부실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 일본 대형 중고차 판매·정비업체인 Big Motor가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여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다가 2023년 적발 이후 자동차 정비사업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

6) 도쿄해상, 손보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7) 日本經濟新聞(2025. 6. 6.), “改正保険業法で何が変わる? 大規模代理店にコンプラ責任者”

- 일본 금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판매뿐 아니라 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고객관리 등 보험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기관에 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함
 - 단순히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운영체계, 경영진의 책임, 준법감시 기능, 위험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 내부통제 미흡이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선명령,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과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함

- 전 지점 단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배치 및 본사 CCO(Chief Compliance Officer; 최고준법감시책임자) 설치를 의무화함
 - 영업부서와 독립된 감시 조직을 의무화하여 '판매 기능'과 '통제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점의 판매 유인 왜곡 및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내부감사 조직 및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면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임
- 특히 자동차 정비업을 겸영하는 대리점에 대한 이해상충 규제가 핵심 정책 이슈로 부각됨
 - 빅모터 사건에서 나타난 자동차 정비와 보험판매 간 이해상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겸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임

○ 더불어 계약자 등에 대한 부당한 유인행위(Prohibited Inducements)의 적용 대상과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상품 판매의 공정성을 강화함

- 개정안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뿐 아니라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행위로 규정함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할인, 리베이트 또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정보공시도 확대되며 시장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대응 부담도 확대되고 있음

- 부정행위 발생 시 모든 계약 보험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도입되며, 특정 보험회사와만 정보를 공유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정보 비대칭 해소가 추진됨
 - 대리점 사업보고서 양식이 개정되어 대형 대리점에 대한 보고 항목 및 공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보험회사-대리점 간 유착 가능성 및 판매 유인 왜곡 문제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비재무 정보까지 포함하는 공시 체계로 확대됨
 - 보험회사와의 관계, 지원 구조, 민원 처리 체계 등 대리점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요구가 강화되는 방향임

3. 시사점

- 일본의 대형 보험대리점 감독체계 개편은 국내의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 간 책임체계 및 감독방향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사례임
 - 국내에서도 보험회사가 상품의 제조와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GA가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제판분리가 확대되면서 GA가 주요 보험판매채널로 성장함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GA의 보험상품 판매비중은 35.7%이며,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1년 24만 4천 명에서 2024년 28만 5천 명으로 증가하였음⁸⁾
 - 국내에서는 보험회사가 위탁 GA의 계약모집·계약관리,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이력 등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별도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를 정식 시행하고 있음
 - 또한 2026년 4월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은 GA 본점이 지점의 내부통제 실태를 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수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을 차등하여 두도록 하는 등 GA 자체의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하였음⁹⁾
 - 일본의 제도개편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관리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별도의 내부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판매채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GA 자체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향후 국내에서도 보험회사의 위탁관리와 GA 자체의 내부통제 사이에 관리·감독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자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GA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정보공유 강화 조치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부정행위 보고 및 정보관리 체계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 일본은 보험대리점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였음
 - 국내에서도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형 GA에서 민원, 불완전판매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사이에서 적절하게 공유·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음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 22.),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1. 15.), "5세대 실손보험 및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